

전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285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박기준

변론 종결 2020. 8. 12.

판결 선고 2020.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20,11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나. C와 피고는 2010. 8. 3. 금액 8,5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피고, 변제기 2012. 4. 30.까지 4,000만 원, 2015. 4. 30.까지 4,500만 원, 이자 연 13.5%로 각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491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는 2008. 6. 19. 자신을 피보험자,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한 E 주식회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C가 2017. 7. 16. 사망하자 피고는 위 종신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5,010,230원을 수령하였다.

라. C가 사망하자 피고는 2018. 6.경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와 유한회사 F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및 그 이후의 추가대여금 등의 실사용자(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A은 C의 상속인으로서, 대여원리금 잔액 합계 21,890,114원1)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9750).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C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치과치료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C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372,824,000원으로 피고가 C에게 보낸 돈보다 96,984,000원이 더 많다. 더구나 피고가 C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까지 수령하였으니 오히려 추가 송금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24. '원고와 유한회사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은 2019. 5. 31.까지, 500만 원은 2019. 7. 31.까지 각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가 망 C에게 대여하고 받지 못한 돈은 피고가 관련 사건에서 감축한 청구취지 금액 21,890,114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C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금 55,010,230원을 수령하였고, C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치과치료비 6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위 보험금 및 치과치료비 합계 61,010,230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잔여대여금 21,890,114원을 공제한 39,120,116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사망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망 C가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망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망 C가 피고를 종신보험의 수익자로 지정한 것과 망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망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치과치료비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1,890,114원의 청구에 대해 원고가 치과치료비 600만 원의 공제(상계)를 주장한바 있고, 위 소송에서 원고 및 유한회사 F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는바, 위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과치료비 상환 채권이 서로 정산되어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금액으로 화해금이 정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성실

1) 소장의 청구금액은 61,850,669원이었으나 나중에 청구취지를 21,890,114원으로 감축함